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3.9.10>

야생동물 농산물·임산물·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5일
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
피 해 상 황	피해지역 시(군) 면 동(리) 번지	
	피해농작물·임산물·수산물 등	가해야생동물
	피해기간 . . . ~ . . . (일간)	
	피해정도	피해금액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	1.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. 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 1부 3. 피해 명세서 1부 4.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현지조사	→	지급액결정	→	통 보
신청인		접수기관 (민원실)				처리기관: 시·군·구 (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)				신청인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, 재활용품)